

	직원인사규정	규정번호	3-3-16
		제정일자	1997.03.01.
		개정일자	2023.03.13.
		개정차수	13차
		소관부서	행정지원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직원인사행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새빛학원 정관 직제 제93조에서 정하는 일반직, 기술직에게 적용한다.

제3조(직종 및 직급) ① 직종은 일반직, 기술직으로 한다.

② 직급은 9급부터 4급까지로 한다.

제4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의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5조(신분보장) 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형사피소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감봉, 휴직, 기타 불리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 1항을 제외한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정관 제84조에 의한다.

제2장 임 용

제6조(신규임용) ① 일반직원의 임용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② 직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 적성 또는 교육 훈련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수습기간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③ 무기계약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중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이 우수한 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규직으로서의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7조(임용 절차) ① 직원의 임용은 임용장을 교부함으로서 행한다. 다만, 면직, 휴직, 전보, 승진의 경우에는 발령통지서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신규 채용시에는 [별표1]의 서류를 제출케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임용시기) 직원은 임용장 또는 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정원) ① 직원의 정원은 정관에 의거 책정한다.

② 비정규직원은 직원정원에 관계없이 실정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1개월 전에 해당직원에게 해임 통고를 하여야 한다.

③ 비정규 직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임용기준) 직원은 기독교인을 원칙으로 하며 직무에 따른 능력, 기술 및 자질 등을 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형하고, 근무 실적 등을 참작하여 직급 및 호봉을 산정한다.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본 법인과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신규임용자의 기본직급 및 호봉) 직원의 신규임용시 기본직급과 호봉은 다음과 같다.

직급	학력구분	대학졸업	전문대학졸업	고등학교 졸업
	일반직·기술직	9급 4호봉	9급 3호봉	9급 1호봉

제13조(승진) ① 승진은 직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 직무연수, 직무능력, 학교에 대한 기여도, 근무상황 등에 의한다.

② 승진에 필요한 근무연수는 승진되는 하위 직급에서 7급까지는 3년, 7급 이상은 4년 이상 근무한 자라야 한다.

제14조(승급) ① 직원의 승급은 1년에 1호봉씩 승급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며, 그 시기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제외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승급될 수 없다.

제15조(승진제청) 직원의 승진은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행한다.

제16조(보직) ① 보직이라 함은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면은 총장이 이를 행한다.

② 보직은 적재적소를 원칙적으로 하며, 각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에 부합되는 급호 또는 특기에 의하여 적격자를 보직하여야 한다.

제17조(전보) 직원의 근무처 이동은 직제와 업무 및 본인의 적성과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이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보 수

제18조(보수결정원칙) ①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의 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을 준용하며 일반 표준생계비, 민간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적정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②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6급이하 57세 이상 직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며, 임금감액을 및 적용시기 등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정년 및 명예·희망 퇴직을 하는 직원이 특별휴가를 득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본봉만 지급한다. <신설 2023.03.13.>

제19조(보수지급일자)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20조(상여금) 정식으로 임명된 직원에 한하여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1조(수습기간) 직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중 봉급(본봉, 직급보조비)은 80%를 지급한다.

제4장 표 창

제22조(표창구분) ① 표창은 공로상과 장기근속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표창은 개교기념일에 실시하며,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표창사유) 직원 표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1. 학교발전에 뚜렷한 업적이 있을 때
2.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여 뚜렷한 공로가 있을 때
3.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

제24조(표창의 결정 및 실시방법) ① 표창은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표창은 이사장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25조(표창 수여자의 특전) 표창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동순위에 있어서의 승진의 우선
2. 특별승급 또는 특별상여금 지급
3. 특별휴가
4. 기타 인사관리에 반영

제26조(장기근속표창) ① 장기근속표창은 10년, 20년, 30년이상 근속한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근속기간 산출은 법인 임용일을 기준으로 임용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매년 3월 1일까지로 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특별상여금과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7조(공로상) 공로상은 대학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직원에게 수여한다.

제5장 징 계

제28조(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징계한다.

1. 법령, 정관, 관계규정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 재산에 손상을 끼쳤을 때
3. 복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29조(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때는 직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0조(변상책임)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지며 변상능력이 없을 때에는 재정보증인으로 하여금 변상토록 한다.

제6장 보 칙

제31조(기타사항) 이 규정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통칙)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바를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 년 8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9일부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 년 3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보수결정원칙) ③항에 관하여는 2023.06.30.부 퇴직자부터 적용한다.